

##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0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### 1. 지원 대상 사업

- 가. 사업명: 2026년 푸드테크 연계 식품산업화 사업  
나. 사업기간: 2026. 3. ~ 12월 \*공모기간: 2026. 3 10. (화) ~ 3. 25. (수)  
다. 사업내용 및 사업량

구분	I 유형	II 유형
지원내용	가공공장(설비포함)	스마트장비류 (식품로봇 포함)
사업량	1개소	8개소 내외
보조한도	350백만원	56백만원 이내/개소

※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 개소, 지원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음.

라. 총사업비: 1,141,667천원(보조금 685,000, 자부담 456,667) \*부가세 제외

마. 보조율: 총사업비의 최대 60% 이내

예시) 신청 총사업비 40백만원(보조금 24백만원(60%), 자부담 16백만원(40%))

### 2. 지원 자격

제주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(신고)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※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된 자료 확인 바람

### 3. 신청 및 접수

가. 신청기간: 2026. 3. 10. (화) ~ 3. 25. (수) 18시까지

나. 신청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신청

\*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 송부(akeja83@korea.kr)

다. 접수장소: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

라. 신청서류: 보조금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

(첨부된 자료 중 붙임1 제출서류 참고)

마. 문의처: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☎ 064)710-317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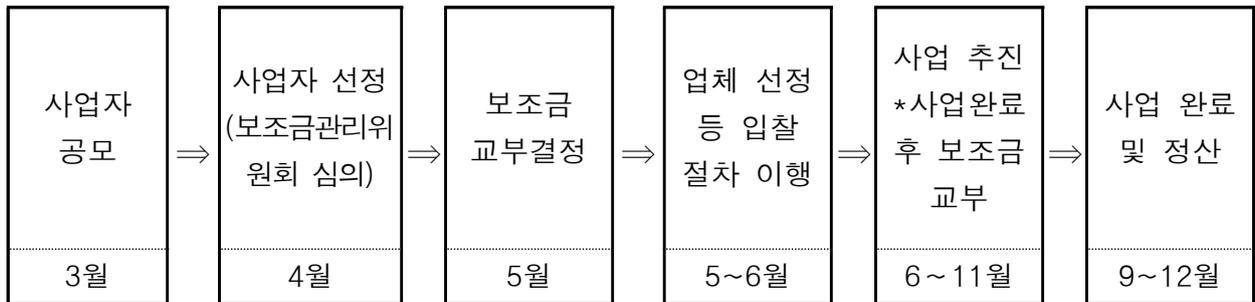
### 4.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

가.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
나. 심사기준: 사업의 적합성, 파급성,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, 신청예산의 타당성, 자부담비율, 전년도 사업 실적 등

다. 결과 통보 : 개별 통보

마. 사업 절차



### 5. 기타사항

가.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는 보완 요청할 수 있음

나. 첨부된 사업계획 및 유의사항을 참고

## < 유 의 사 항 >

### 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자부담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### 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### 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
-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검증받아야 함
-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

### 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### 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(☎064-710-317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